

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3. 1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3월 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-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,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, 방법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·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,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3조)
-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협의회를 둠 (안 제5조)
-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·제공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 (안 제13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的 要 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